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 9. 10 선고 2023가단7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7. 2.

판 결 선 고 2024. 9. 1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3. 5. 15.1) 체결된 증여 해제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23. 5. 16. 접수 제9608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계 2021. 11. 3. 접수 제225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2) 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약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22. 2. 26.경부터 2022. 8. 31.까지 C에게 합계 20,378,000원 상당의 농약종자비료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C는 원고에게 2022. 12. 1. 5,000,000원, 2023. 1. 20. 5,000,000원만을 변제하였다.

나. 한편, C는 2021. 11. 1. 동생인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 11. 3. 접수 제22544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채무초과 상태에서 2023. 5.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이하 ‘이 사건 증여해제계약’이라 한다)하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 5. 16. 접수 제9608호로 그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해제계약 당시인 2023. 5. 15. C에 대한 물품대금이 성립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증여해제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이외에는 달리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 등으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해제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해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C는 그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자신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가문의 유산인데, C가 사업자금 용도로 필요하다고 해서 증여해준바가 있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돌려준다고 하기에 다시 되돌려 받은 것 뿐이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증여해제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경위에 의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채권자의 담보가 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밖에 피고와 C의 관계,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C가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달리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사해의사의 추정을 반복하기 부족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해제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에게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23. 5. 16. 접수 제9608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2021. 11. 3. 접수 제225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예선

별지

1) 원고는 소장 및 2023. 6. 20.자 보정서에 ‘2023. 5. 16.자 증여’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증여해제계약은 2023. 5. 15. 이고, 이를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로된 시점이 2023. 5. 16.이므로, 2023. 5. 15.로 기재한다.

2) 원고는 소장 및 2023. 6. 20.자 보정서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회복등기를 구하는 것으로 선택하여 판단한다.